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가)의 ㉠에 부정적일 것이다. 미래 세대와 현
 재 세대 간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가 천연
 자원을,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때,
 이는 미래 세대가 잠재적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미래 세대는 그 존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회계약과 관련한 어떤
 한 종류의 합의도 할 수 없으며, ~~불확실~~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인 권리를 지니지만, 미래 세대
 스스로는 사회계약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담보하지 못한다.
 그들이 현 세대에 이익이 된다면 이는 현 세대의 구상에 의해 기
 대되는 이익일 테지만, 미래 세대가 기존의 제도 등에 합류할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인 한에서 그들은 사회계약의
 구성원이 아니며, 그들을 잠정적인 구성원으로 가정한다 한들, 약속
 준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처벌의 수단이 전무하다. 상기의 기술은
 미래 세대가 (나)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공리주의는 현재의 ~~선택~~ 선택에 따라 미래에 생길 잠정적인 쾌락과
 고통을 계량하여, 쾌락이 우세한 정도가 높을수록 도덕적인 선택이라
 판단한다. ~~공리주의에 따라 (가)의 가정을 판단할 때,~~ (가)의 가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가정을 A, 이용하는 가
 정을 B라 하자. 가정 A ~~의 선택~~ 경우, 현 세대의 '일반적인' 불편과
 미래 세대의 높은 수준의 편익이 결과로서 도출된다. ~~반면~~ 반면 가정 B
 의 경우, 현 세대의 '일반적인' 수준의 편익과 미래 세대의 높은 불
 편이 그 결과일 것이다. '불편'을 '고통'으로, '편익'을 '쾌락'으로 치환할
 시에 가정 A에서의 선택은 도덕적이며, 가정 B의 선택은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 두 선택을 비교하면 가정 A에서의 선택이 B의 선택보다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해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가)의 ㉡이
 뜻하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상의, 공리주의에 의거한 ㉡ 명제의 정당화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로 ~~현~~
 현 세대의 쾌고 감수 능력자들의 수와 미래 세대의 그것들이 동일할 ~~것~~ 것이
 라는 가정이 있다. 가령 미래 세대의 수가 현 세대보다 현저히 적
 을 경우, 미래 세대의 개개인이 겪을 고통이 현 세대보다 크다 하더
 라도, 그 총량은 현 세대의 고통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정 B를 따르는 편이 공리주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또, (가)에서
 의 불편이 고통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불편~~ 고통에
 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한다. 가령 미래 세대가 '불편'에 대처하며 자
 기효능감을 느낄 시에, '불편'은 꼭 고통인가? ㉡ ~~이~~ ~~실~~ ~~득~~ ~~력~~ ~~을~~ ~~갖~~ ~~기~~
 위해서는 이런 난점이 해결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제시문 (가) 의 ㉠ 인 ‘우리의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
 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제시문 (나) 의 사회
 계약론은 부정적 대답을 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 사회계약
 의 입장을 알아 보겠다. 사회계약론은 구체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 실현을 강제할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이 규칙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도덕
 적 의무도 존재한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 데 이 조건들을 동해유의 질문에 대한 부정
 의 대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우선 도덕적 의무의 성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사람
 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한다면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 의 ㉠ 을 보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의 구성원과 암묵적 약속이 불가능
 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이유에 자신 사회
 적 이익을 누리기 위함인데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상호’ 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 조
 건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처벌을 동해볼 이익을 출수할 수 있는
 한다면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조건과 같은 맥락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들이 규칙을 어기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없다.

한편 제시문 (가) 의 ㉡ 인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제시
 문 (나) 의 공리주의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미래 세
 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
 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복지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제시문 (가) 에 비추어 보면, 미래 세대가 A 인지 B
 인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B 의 구성원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은 부정적
 일 것이다. 오직 높은 복지를 누리게 하는 정책이 선이므로 ㉡ 은 정
 당화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결정에 반대한다. 오로지
 최대이익, 최소 고통만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에게 대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정
 책을 펼친다고 하였을 때, 순수 쾌락의 양을 따지는 과정에 있어
 제되되는 소수의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쾌락의 최대
 화에만 집중한다면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
 고 희생당하는 것이다. 즉 공리주의는 전체주의를 정당화할 위
 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